

담양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예고

「담양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6. 11.

담양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담양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2. 제안이유

- 담양군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라. 연도별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독서 문화 진흥 여건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시행

4. 입법예고 기간 : 2025. 6. 10. ~ 6. 15.(5일간)

5.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7~8(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서식

의견서		
1. 조례안	담양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2. 의견	관련조문	의견
3. 기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6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담양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담양군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양군민의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든 담양군민이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 계획) 군수는 법 제5조의 기본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과 목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① 군수는 담양군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 문화 진흥 행사
2. 생애주기별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3. 직장과 지역의 독서 문화 동아리 장려 및 지원
4.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문화 활동 지원
5. 다문화가정의 독서 문화 활동 지원
6.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활동
7. 그 밖에 군수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지원)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지역 서점·학교 및 담양교육지원청 등의 관계기관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